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819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09. 9. 3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지방공기업법 개정(2009.4.1. 공포, 2009.10.2. 시행)에 따른 공단 임원의 임명 및 연임 등에 관한 사항과,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3년 단위로 연임하였으나,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제2항)
- 이사장을 임명할 때 거치던 “이사장추천위원회” 가 “임원추천위원회”로 명칭이 변경되고, 대상도 이사 및 감사까지 확대됨에 따라, “이사장추천위원회”를 “임원 추천위원회”로 개정함(안 제8조제1항)
-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“시의 예산업무 담당국장”으로 하고,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는 “세무·회계·공기업분야의 전문가”를 포함하도록 함(안 제9조 제1항)
- 이사 수를 “7인 이내”로 규정한 사항은 동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임원의 수를 “정관”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,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수는 “이사장과 이사 1인”으로 하던 것을,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동일하게 “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”으로 함(안 제9조 제1항)
-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던 것을,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,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함(안 제9조제2항)
- 감사는 “임원추천위원회”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되, 시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감사를 겸임할 경우에는 제외함(안 제10조 제1항)

- 공무원 파견범위를 공단 정원의 “10분의 1”에서 “100분의 5”로 함
(안 제29조)
- “이사장추천위원회”가 “임원추천위원회”로 명칭이 변경되고, “임원추천위원회”를 공단에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, 조례 개정 후 「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은 폐지 예정임

개정조례안 : 불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(결과)

- 입법예고 기간 : 2009. 8. 4. ~ 8. 24.(20일간)
- 제출의견 : 공무원 파견시 직급별(5~7급)로 범위를 정하여 상시적 파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9조)
- 검토결과 : 미반영
 - 정원의 5%는 전체 파견공무원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, 5%로 범위내에서 업무난이도, 업무량, 시기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필요 직급을 파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,
 - 상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“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”에 부합되지 않음.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2항 중 “연임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-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, 비상임이사와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,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 또한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비상임이사에는 세무·회계·공기업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되 시의 예산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.
-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,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,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지방공기업법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6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9조 중 “10분의 1”를 “100분의 5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.

| 소관 실·과 | | 기획예산과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입 | 실·과장 직위·성명 |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|
| 안 | 담당·팀장 직위·성명 | 예산2담당 정양민 |
| 자 | 담당자 성명·전화 | 한복수 (행정 2807) |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7조 (임원)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,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② 이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하게 할 수 있다</p> | <p>제7조 (임원) ① 상임이사, 비상임이사와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② ----- --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</p> |
| <p>제8조 (이사장)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,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「지방공기업법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6조의2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| <p>제8조 (이사장)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되며,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 또한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9조 (이사) ① 이사는 7인 이하로 두되, 이사장과 이사 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.</p> <p>②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| <p>제9조 (이사) ① 비상임이사에는 세무·회계·공기업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시의 예산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.</p> <p>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,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되며,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0조 (감사)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10조 (감사)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되어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지방공기업법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6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29조 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</p> | <p>제29조 (공무원의 파견) ----- ----- ----- 100분의 5 ----- -----.</p> |